

[사 건 명] 행심 2018 - 3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8. 6.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6. 27.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8. 7.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청구인이 책상을 밀친 것으로 오해하고서 청구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억울해서 옆에 있던 두어 명 학생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욕한 것이지만, ‘시○’ 이나 ‘병○’ 이란 욕은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구타를 당한 피해학생임에도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라는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쓴 욕설은 학생들이 평소 사용하는 생활 속의 욕설이며, 모욕적이지도 않은 욕설로 사과문을 쓸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에게 욕설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 목격학생들이 청구인이 ○○○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나. 청구인이 욕설한 부분도 학폭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학폭위는 학폭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행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가.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과 목격학생들의 확인서, 청구인 및 ○○○의 학폭위에서의 각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각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2018. 6. 7. 1교시 쉬는 시간에 2학년 3반인 청구인이 체육복을 빌리러 2

학년 4반 교실에 가서 김00과 밀치면서 장난치는 과정에서 김00 학생이 엎드려 자고 있던 000의 책상을 건드렸고, 000이 ‘사과하라’고 하자 김00은 사과했지만 청구인은 자신이 밀친 것이 아니라며 사과를 하지 않고 000에게 욕설(시발 병신 어이가 없네)을 해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청구인이 뒷문으로 교실을 나가다가 다시 ‘똥래 병0이’라고 욕설을 하자, 000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다.

- 청구인은 학폭위에 참석하여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은 했고 나머지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여 000에게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나 구술심리과정에 ‘000이 사과를 요구하자 억울해서 본인도 모르게 욕을 했습니다’ 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했던 욕설이 ‘시발, 병신’ 은 아니라고만 주장하는데,

000은 청구인이 사과하지 않고 ‘시발, 병신’ 이란 욕을 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목격학생 중 정00은 청구인이 ‘시0, 병0’ 이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며, 청구인이 체육복을 빌리려고 했던 이00(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함)도 청구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000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언어폭력으로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청구인에게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며, 이 사건 이전에 청구인과 ○○○ 간에 다툼이 없었고, ○○○이 잘못을 인정하며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구인에게 지속성 0점, 고의성 0점, 화해정도 0점을 부여했고, 다만 청구인의 욕설이 ○○○의 폭력을 유발한 면이 있어서 심각성 1점,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 대리인도 ‘잘못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성정도는 2점을 부여하여 총 3점으로 판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